

12.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10월 25일
- 발 의 자 : 이영애 의원, 강성환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박갑상 의원, 박우근 의원, 이만규 의원, 임태상 의원, 정천락 의원, 하병문 의원,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상정일자 :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2019년 11월 22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영애 의원)

□ 제안이유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³²⁾노인과 경증치매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3년부터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³³⁾’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32)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에 비해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은 치매가 아닌 상태를 의미

33) 기억학교는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치유센터 역할을 하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곳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억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기억학교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억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지정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기억학교 명칭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포상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창업)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3조**는 기억학교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의 안전한 돌봄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기억학교에서 수행할 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함에 있어 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법령이나 조례 위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 발생 시 기억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지정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안 제8조**는 기억학교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본 조례에 따른 지정기관 이외는 ‘기억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안 제10조**는 지정기관에 대해 연 1회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안 제11조**는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안 제12조**는 기억학교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정도인지장애노인이나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시설로서,
- 2013년 3월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1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대구시에서는 15개소의 기억학교를 지정하여 601명의 경증치매노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더욱 더 활성화해야 할 사업이 되겠음.
-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지만, 기억학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시적으로 지원받던 복권기금마저 내년부터 크게 축소되어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국비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

<기억학교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요구액
계	3,084,000	4,288,000	4,548,000	4,797,690
기금	0	4,088,000	4,248,000	1,267,000
시비	2,467,200	200,000	300,000	2,824,552
구·군비	616,800			706,138

※ '18년~'20년(예정) : 복권기금 지원, '17년 이전, '20년 구비 매칭비율 20%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기억학교 운영 효과에 대해 외부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항 추가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기억학교 운영 성과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항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짐.	
같은 구에서도 기억학교 간의 거리가 멀고, 지역별 안배 설치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